

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. 12. 21 선고 2022가단2278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이현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2. 21.

## 주 문

1.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중 2/13 지분에 관하여,  
가. 피고와 B 사이에 2020. 3. 6. 체결된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.  
나. 피고는 B에게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2020. 5. 18. 접수 제11569호로 마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# 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(무변론 판결)

판사 김새미

## 별 지

## &lt;부동산의 표시&gt;

1. 충북 제천시  전 1245㎡
2. 충북 제천시  대 486㎡
3. 충북 제천시  답 592㎡
4. 충북 제천시  답 2452㎡
5. 충북 제천시  답 585㎡
6. 충북 제천시  답 585㎡

이상.

별지2

## 청 구 원 인

### 1. 신분관계

가. 원고는 “금융회사 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”에 의거 금융회사 보유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로서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비롯한 각종 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관리 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소외 B이 부담하는 대출채무를 양수받은 기관입니다.

나. 피고는 배우자인 피상속인 망 C의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B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입니다.

### 2. 원고의 B에 대한 양수채권

가. 원고의 채무자인 위 B은 채권금융회사인 D 및 E에 채무를 부담하였고, 그 부실채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F 유한회사에 양도되었습니다.

나. 원고는 위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위 B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B을 상대로 부

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전41421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. 9. 11. “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96,814,112원 및 그 중 25,877,781원에 대하여 2018. 9. 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”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, 이 결정은 2018. 10. 1.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2018. 10. 16. 확정되었습니다.

다. 그럼에도 위 B은 현재까지 무자력을 이유로 자신의 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

### 3. 피고와 B의 사해행위

가. 위와 같이 B은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변제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지체하던 중 B의 부친인 피상속인 망 C 사망에 따라 그 재산이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B등에게 공동 상속되었습니다.

나. 그런데 B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채무를 면탈 할 목적으로 자신은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자신의父인 망 C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에 있어 그 상속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하고 모친인 피고에게 협의분할 하여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입니다.

다.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제외하면 B은 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. 따라서 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협의분할하기로 협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B의 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B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B의 상속지분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).

#### 4. 원상회복

그렇다면 피상속인 망 C의 재산상속인은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B, G, H, I, J이므로, B 명의로 회복되어야 할 지분은 2/13입니다(갑 제5호증의 1, 2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).

#### 5. 결어

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려는 위 B과 통정함으로써 위 B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법정상속지분을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던 것입니다.

따라서 원고는 위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.

